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재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152

발의연월일: 2020. 11. 10.

발 의 자:윤재갑·김윤덕·이정문

문진석 · 이상직 · 용혜인

홍문표・홍성국・이동주

조경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농협중앙회의 대표자인 회장은 회원조합장 중 일부로 구성된 대의 원회에서 선출하고 있어 다수의 회원조합장은 대표자 선출에 참여하 지 못하고 있음.

이에 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되 제122조제5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의결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하도록 변경하여 회원조합 의 의사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자 함(안 제130조제1항 단 서).

그리고,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에 지원하는 조합상호지원자금과 이 차보전자금에 대해서 매년 조성·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134조제6항).

법률 제 호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회장의 선출은 제122조제5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의결권은 정 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한다.

제13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중앙회는 제5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과 기타 이자지원 형태로 회원을 지원하는 이차보전자금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공개하여야 한다.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0조(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)	제130조(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)
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,	①
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	
다. <u><단서 신설></u>	<u>다만, 회장의 선출은 제122</u>
	조제5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의
	결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
	따라 행사한다.
② ~ ① (생 략)	② ~ ⑪ (현행과 같음)
제134조(사업) ① ~ ⑤ (생 략)	제134조(사업) ① ~ ⑤ (현행과
	같음)
<u><신 설></u>	⑥ 중앙회는 제5항에 따른 조합
	상호지원자금과 기타 이자지원
	형태로 회원을 지원하는 이차보
	전자금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
	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원조합
	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 계획
	을 수립하고 공개하여야 한다.
	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
	<u>이와 같다.</u>